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, 지하층 주차장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제한하며, 내화채움구조 등 품질인정자재 설치 규정을 마련하는 등, 건축물 안전 및 화재 예방 기준을 강화함(안 제22조의2 신설, 제52조제5항 등).
-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를 의무화하고, 위법건축물을 설계한 자 및 실태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(안 제79조제5항, 제80조제2항, 제108조제1항 등).
- 일조사선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, 지자체의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여 위반건축물 조사 및 시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61조제1항, 제87조의3제1항 등).

II. 검토의견

□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및 누설 등에 대한 벌칙 신설 (안 제111조제9호 신설)

안 제79조제8항은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및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,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및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.

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금지의무 신설에도 불구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는바, 이 경우 금지의무 규정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.

따라서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.¹⁾

[수정의견]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11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	제111조(벌칙) ----- -----

1) 위 금지규정은 당초 안 제79조제8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었으나, '자료 요청'과 '목적 외 사용 등 금지'는 별개의 내용이므로, 금지규정 부분만을 따로 제9항으로 신설하면서 안 제111조제9호에는 제79조'제9항'을 인용함.

금에 처한다. 1. ~ 8. (생략) <u><신설></u>	-----. 1. ~ 8. (개정안과 같음) <u>9. 제79조제9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</u> <u>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</u> <u>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</u>
---	---

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수석전문위원 심정희)